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25 발의연월일: 2022. 11. 18.

발 의 자:정일영·김성환·이동주

김용민 • 이용빈 • 홍정민

이용선 · 김승원 · 주철현

김경만 • 서영석 • 김회재

유정주 • 이용우 • 이원택

신정훈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4년 7월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지속가능경영(ESG) 가치실현과 관련하여 상시적 관리·감독을 가능하게하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시 등을 수행하는 정도가 아직 미흡한 수

준인 점 또한 지적되고 있음.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8%, 수출의 18.2%, 매출의 16.1%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만큼, 중견기업들이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상시화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들이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 사업을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대한 유사 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통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5호 및 제5항 신설, 제31조제2항 신설, 부칙 제2조 삭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⑤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전문기관) ① • ② (생	제23조(전문기관) ① • 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③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5.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
	<u>능경영 도입·확산을 지원하</u>
	기 위한 사업
<u>5.</u>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
	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략)	③ <u>제1항 및 제2항</u> 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 | <삭 제> 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 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 · 징 수한다.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 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